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표상 제5급 제4호의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려면 노동부 예규 장해등급 판정요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3대 관절이 완전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원고와 같이 오른쪽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에는 장해가 없고 손목 관절만 장해가 있으며 아울러 손가락을 못쓰게 된 것에 대하여 제5급 제4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제8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경우와 제7급 제7호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에 나누어 적용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는 제5급 제2호, 제7급 제7호, 제8급 제6호, 제14급 제4호에 해당하여 조정장해등급은 제3급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1997. 1. 14.
판결 95구30309
- 판시사항 : 노동부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을 인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2. 3. 13. 위 회사와 이웃한 소외 ○○페인트 주식회사 변전소에서 약 22,9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되어 '양수부 상지·안면·흉부·복부 및 양하지의 2도 내지 3도 전기화상'을 입었다.

②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1995. 5. 1. 자로 그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자혜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4. 4. 19. 치료종결하였는데, 양 팔에 후유장해가 남아 같은 해 11. 29.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③ 그러자 위 노동사무소장은 같은 해 1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신체장해등급표(이하 등급표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장해를 판정하면서 원고의 왼팔에 대해서는 제5급 제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오른팔에 대해서는 제7급 제7호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제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오른쪽 다리에 대해서는 제14급 제4호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제3급의 장해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는 이에 따라 장해급여 16,788,260원을 지급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왼팔을 주관절 이하를 절단하여 완전히 못쓰고, 오른팔도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등급표상 제1급 제6호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그보다 낮은 제3급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아래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당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 및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위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치료 종결 후 원고에게 남게 된 후유장애는 왼팔은 손목관절 이하가 절단되고, 오른팔은 손목관절 이하의 정중, 요골, 척골 신경마비로 전 기능이 상실되어 운동범위도 신전 20도, 굴곡 40도인 사실, 오른손의 손가락들도 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15도로 손가락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고, 또한 오른쪽 무릎 관절 주위에 전기화상으로 인한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4호의 1의 기재와 당원의 위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각 위에 일부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등급표상 원고의 왼팔이 손목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것은 제5급 제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오른쪽 무릎관절 주위에 손바닥만한 흉터가 남은 것은 제14급 제4호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

문제는 원고가 오른팔 손목관절과 손가락

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이 등급표상 제5급 제4호의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등급표는 한 팔을 못쓰게 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5급 4호에서는 위와 같이, 6급 6호에서는 '한 팔이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7급 9호에서는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8급 6호에서는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8급 6호에서는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예규 제101호(장애등급 판정요령)에서는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거나, 상완신경이 완전마비된 경우라고 하고 있고,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경우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았을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았을 경우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았을 경우란 요골과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았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등급표에서 한 팔의 장애 정도를 위와 같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등

급표상 제5급 제4호의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위 노동부 예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팔의 3대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원고와 같이 오른팔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에는 장애가 없고 손목 관절만 위와 같이 장애가 있으며 아울러 손가락을 못쓰게 된 것에 대하여 제5급 제4호를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제8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경우와 제7급 제7호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나누어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장애는 피고가 애초 판정한 것처럼 제5급 제2호, 제7급 제7호, 제8급 제6호, 제14급 제4호에 해당하고,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애등급은 제3급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장애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결}

건강상식

《알아봅시다》

항암식품
(10)

Grape-fruit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감귤류인 Grape-fruit(그라프-플루트)는 분명히 항암력이 있다. 감귤류가 대량 소비되고 있는 지역 주민은 암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감귤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C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영양소로 강한 효력을 갖고 있는 발암성 물질을 중화할 수 있다. 그러나 비타민 C만이 아니라 포도에 포함되고 있는 다른 성분도 항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실험에서 그라프-플루트는 암에 대해 명확한 길항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포도의 추출물을 피하에 주사받은 쥐는 종양의 성장이 중지되고 암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진정되고 있었다. 그라프-플루트의 껍질에 주목할만한 抗突然變異原 즉 암으로 이어지는 세포의 변화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식사관계를 추구하는 연구가 성행하고 있지만 1986년에 실시한 엄밀한 대조연구에서 채식암 환자가 비채장암 환자의 식사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그라프-플루트와 인삼이 항암인자로 떠올랐다. 매일 감귤류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은 채식으로 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화란에서도 감귤류가 위암의 위험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판결}